**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**

**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**

제 14 조

  5.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